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07. 09.

조정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07.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4. 09.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1. 25.)

  상정,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2. 02.)

상정, 축조심사

-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2. 03.)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9차 정무위원회 (2024. 12. 0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정식의원)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 병 권)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강화

□ 개정안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등록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등).

현 행	한정애·천준호 의원안	김태선 의원안	조정식 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순자산액"이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 1. 3억원----------순자산액----------<단서 삭제>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 1. 2억원----------.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 1. 1억원----------.

2. ~ 5. (생 략)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② ----------.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억원----------순자산액---------- <단서 삭제>	2. 2억원----------. ----------.	2. 1억원----------. ----------.
3. ~ 7. (생 략)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1] 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3조제1항)에 등록하도록 하되, 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자산규모 100억원과 대부채권 잔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법 제3조제2항)하도록 하고 있음.[2]

○ 2023년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수는 8,597개로 형태별로 보면, 법인은 2,724개, 개인은 5,873개이고, 등록기관별로 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969개, 지자체에 등록한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부업자는 7,628개임.

[표 1] 등록 대부업자수 현황

(단위: 개)

구분		'22.6말	'22말	'23.6말	'23말
합계		8,775	8,818	8,771	8,597
형태별	법인	2,766	2,765	2,730	2,724
	개인	6,009	6,053	6,041	5,873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952	982	963	969
	지자체 등록	7,823	7,836	7,808	7,628

(자료: 금융감독원)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은 대부업자가 등록하려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되,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대부업법」은 시·도지사 등록 대상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모두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은 시·도지사 등록 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대부업 등록 시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

구분	법률	시행령
시·도지사 등록업체(§3①)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3의5①1)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업체(§3②)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3의5②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억원 이상
		그 외: 3억원 이상

○ 대부업법이 처음 제정된 2002년 당시에는 대부업자등이 등록하기 위한 별도의 자본 요건이 없었으나,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어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4일 「대부업법」을 개정(201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여 현행과 같은 자본 요건을 신설[3]한 것임.

□ 개정안은 현행 「대부업법」상 자기자본(또는 순자산액)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여 시·도의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잦은 등록·폐업이 일어나거나 등록 업자가 불법적인 사채에 활용되는 등 대부업 이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등록 이후에도 이를

3)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도 각 등록 대상별 자본 요건을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음(단,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2018년 개정으로 추가되었음).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구체적으로 보면, 네 건의 개정안은 모두 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있으며, 한정애·천준호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본 요건 상향 외에도 법인에 대한 순자산액 개념 도입, 전업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자본 등록 요건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한정애·천준호의원안은 대부업자등이 등록 이후에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개정안 내용 비교

구분	현행	한정애·천준호 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조정식의원안
최저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전업 대부 중개업자 자본 요건	없음	**3억원 이상 (신규도입)**	없음	없음
자본요건 기준	법인: 자기자본 개인: 순자산액	**순자산액(공통)**	법인: 자기자본 개인: 순자산액	법인: 자기자본 개인: 순자산액
등록 이후 자본요건 유지	없음	**등록 이후 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	없음	없음

* 시·도지사 등록 대상 및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공통
**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표 1 참조

○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영세 대부업자가 대부잔액이 적고 거래자가 적어 자금공급자 역할은 미미한 반면, 영업실적 제출 등 의무를 미이행하고 잦은 등록·폐업 반복으로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4)]

□ 먼저, 개정안의 내용 중 최저 자본 요건을 상향하려는 것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부업의 경우 현행 제도 상 진입요건이 낮아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형식적인 등록 이후 불법적인 영업을 행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신규등록을 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11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에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중 개인의 경우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자본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대부업법」 제18조의2[5)]에 따라 설립된 대부금융협회는 개정

---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정책건의, <https://www.gaok.or.kr/gaok/proposal/statusView.do?menuNo=200026&cId=570>

5)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개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대안[6]으로 제시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 전업대부중개업자를 제외한 등록 대부업자는 총 7,555개로, 개정안 및 대부금융협회 의견에 따라 자본 요건을 상향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은 약 44%~65%, 개인은 약 57%~78%,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법인)은 약 2%~4%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개정안에 따른 자본 요건 미충족 대부업자 수(2023년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총 등록 대부업자 수		개정안별* 자본 요건 미충족 대부업자 수				
			有잔액 대부업자	① 3억원	② 2억원	③ 1억원	④ 3억원 /1억원	⑤ 1억원 /5천만원
지자체 등록	법인	1,636	1,296	1,056 (64.5%)**	941 (57.5%)	717 (43.8%)	1,056 (64.5%)	717 (43.8%)
	개인	4,974	2,739	3,869 (77.8%)	3,692 (74.2%)	3,279 (65.9%)	3,279 (65.9%)	2,812 (56.5%)
금융위 등록		945	291	37 (3.9%)	27 (2.9%)	22 (2.3%)	37 (3.9%)	22 (2.3%)
합계		7,555	4,326	4,962	4,660	4,018	4,372	3,551

(자료: 금융감독원)

* ① 한정애·천준호의원안: (공통) 3억원, ② 김태선의원안: (공통) 2억원, ③ 조정식의원안: (공통) 1억원, ④ 금융위원회: (법인) 3억원 / (개인) 1억원, ⑤ 대부금융협회: (법인) 1억원 / (개인) 5천만원

** 괄호 안의 백분율은 총 등록 대부업자수 대비 비율을 의미

6) 2022년 서울특별시가 제안한 대정부정책건의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자본 요건을 상향할 것을 요청하였음.

□ 다만, 위와 같이 자본 요건을 상향함으로 인해 이를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가 크게 감소[7]할 경우, 운영 능력이 없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외에 저신용자·취약계층의 신용공급 규모가 축소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3년말 기준 대부업자 유형별 대출잔액,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전체 대출잔액의 91.9%, 이용자수의 86.7%가 법인 대부업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가 전체 법인 대부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1.2%, 92.2%임.

[표 5] 대부업자 유형별 대출잔액 및 이용자 수

(단위: 억원, 만명)

구분		'22.6말	'22말	'23.6말	'23말
법인 대부업자	대출잔액	149,421	148,459	136,476	115,063
	이용자수	97.1	89.5	75.1	63.1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잔액	120,927	117,788	105,361	81,886
	이용자수	92.3	84.5	70.3	58.2
자산 100억원 미만	대출잔액	28,494	30,671	31,115	33,177
	이용자수	4.8	5	4.8	5
개인 대부업자	대출잔액	9,343	10,219	9,445	10,083
	이용자수	9.3	9.4	9.7	9.7
합계	대출잔액	158,764	158,678	145,921	125,146
	이용자수	106.4	98.9	84.8	72.8

(자료: 금융감독원)

- 다만, 2022년 6월말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대출잔액 및 이용자수는 매 반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대부업체의 이용자수 및 대출잔액 하락에 따른 것으로, 중소 대부

7) 다만, 등록 당시에는 개정안별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향후 재등록 시 이를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으므로, 위에 제시한 숫자 모두가 시장에서 이탈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음.

업체 및 개인 대부업자의 이용자수 및 대출잔액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개정안과 같이 자본 요건이 강화될 경우 주로 중소 대부업체 및 개인 대부업자가 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층·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거나,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하반기 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대부업자 제도[8]를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부업법과 유사한 일본의 「대금업법」에서는 순자산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대금업자[9]가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업법 시행령」[10]은 그 기준을 5천만 엔으로 정하고 있음.

---

8)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조건(저신용자 대출비중 70%이상 또는 저신용자에 대한 개인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9) 우리나라의 대부업자와 유사한 개념

10) **(일본)「대금업법 시행령」제3조의2 (대금업자의 최저순자산액)** 법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천만 엔으로 한다.
※자료: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관계부처 및 협회의 의견, 자산 요건 강화 시 사업자 수 감소로 인한 저신용자 등의 신용공급 감소 효과, 일본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자본 요건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단기간 소액 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일정 부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연동형 최고금리[11]를 도입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급격한 신용공급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12]가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전업 대부중개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본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13]의 경우 앞선 대부업자등의 자본 요건 상향과 유사하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대부금융협회는 비슷한 업태를 가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출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14]의 요건에도 자본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는 것과 비교

---

11)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대출상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1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대하여 분기별 시장평균금리(Annual Percentage Rate, APR) . 를 산정함. 이후 중앙은행이 그룹별 시장평균금리를 고시하고 금리상한은 '시장평균금리의 1.33배 로' 결정됨.(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161호,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2023.12.4. 참조)

12) 다만, 이들 방안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 인상에 따른 금리부담 증가, 연동형 최고이자율 도입 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저하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161호,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2023.12.4. 참조)

13)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 중 한정애·천준호의원안만 해당됨.

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볼 때 대부중개업자에게만 높은 수준의 순자산액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임.

- 현행 대부업법은 전업 대부중개업자가 실제 금전대부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중개만 한다는 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15]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자본 요건을 두지 않고 있으나,

- 국제결혼중개업 등 다른 중개업종의 경우 등록을 위한 자본 요건을 둔 사례[16]가 있고, 실제 영업 의지나 실적이 없는 전업 대부중개업자가 무분별하게 난립[17]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5)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 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17) 대부중개건수와 중개금액, 중개수수료는 각각 2021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에 70~82%

다는 기대효과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전업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자본 요건을 신설할 경우 이들이 대거 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최근 감소 추세인 대부중개시장이 추가적으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부중개건수[18]는 2021년 하반기 25.9만건에서 2023년 상반기 6.6만건으로 급감한 이후 2023년 하반기에는 7.8만건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중개금액과 중개수수료는 2021년 하반기 5조 3,303억원 및 944억원에서 2023년 하반기 1조 1,592억원 및 168억원으로 각각 감소하였음.

- 같은 기간 대부중개업을 전업하는 업자 수는 1,233명에서 1,042명으로 감소하였음.

[표 6] 대부중개업 현황 (단위: 개, 만건, 억원)

구분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대부중개업자 수 (전업)	1,233	1,218	1,195	1,129	1,042
중개건수	25.9	24.1	16.3	6.6	7.8
중개금액	53,303	51,429	31,634	9,284	11,592
중개수수료	944	890	498	132	168

(자료: 금융감독원)

가 감소하였으나, 전업 대부중개업자 수는 15% 감소함.

18) 대부중개건수, 중개금액, 중개수수료는 대부중개업을 전업으로 하는 업자와 대부업과 중개업을 겸업하는 업자 모두를 포함한 것임.

- 대부금융협회는 이와 같이 대부중개업 시장 규모가 축소한 것은 법정 최고금리 하락[19]에 따른 금전대부업자의 신규대출 축소 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임.

○ 참고로, 2023년말 기준 전업 대부중개업자 수는 1,042개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20], 법인은 74%~83%, 개인은 83%~85% 등 대부분의 전업 대부중개업자가 각각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개정안에 따른 자본 요건 미충족 대부중개업자 수(2023년말 기준)

(단위: 개)

구분		총 등록 대부중개업자 수	개정안별* 자본 요건 미충족 대부중개업자 수				
			① 3억원	② 2억원	③ 1억원	④ 3억원 /1억원	⑤ 1억원 /5천만원
지자체 등록	법인	119	99 (83.2%)	96 (80.7%)	88 (73.9%)	99 (83.2%)	88 (73.9%)
	개인	899	761 (84.6%)	759 (84.4%)	756 (84.1%)	756 (84.1%)	744 (82.8%)
금융위 등록		24	-	-	-	-	-
합계		1,042	860	855	844	855	832

(자료: 금융감독원)

* ① 한정애·천준호의원안: (공통) 3억원, ② 김태선의원안: (공통) 2억원, ③ 조정식의원안: (공통) 1억원, ④ 금융위원회: (법인) 3억원 / (개인) 1억원, ⑤ 대부금융협회: (법인) 1억원 / (개인) 5천만원

** 괄호 안의 백분율은 총 등록 대부중개업자수 대비 비율을 의미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전업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자본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은 중개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유사한 업종의 사례, 이로 인한 대부중개업 시장의 추가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이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 2021년 연 20%로 순차적으로 인하

20) 개정안 중 한정애·천준호의원안만 전업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자본요건을 신설하고 있으나, 각 자본요건 수준 별 미충족 대부중개업자 수를 비교하기 위해 다른 개정안 등의 수치에 따른 결과도 함께 제시함.

위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도입여부 및 수준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등록 이후에도 자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경우, 상향된 자본 요건을 등록 당시에만 충족시키는 편법적인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자본 요건 유지 의무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2015년 대부업법에 자본 요건을 도입할 당시 논의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시 약 8,800여개의 대부업체가 이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도입하지 않았음[21].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자본 요건을 강화할 경우 현재에 비해 등록되는 대부업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자본 요건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자본 요건 강화 여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가 2024년 9월 11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에는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21) 제332회국회 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5.4.28.) 참조

○ 다만, 개정안은 대부업체등이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상의 이유나 착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자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22]을 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한정애·천준호 의원안은 대부업법 상 자본 요건의 기준을 순자산액으로 통일[23]하고 있으나, 자기자본과 순자산액은 회계적으로 개념 차이가 거의 없는 점, 타금융업권도 대부분 자기자본을 재무요건으로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시 변경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의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을 합계한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

22) 제12조(검사 등) ⑦ 시·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3) 현행 대부업법은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개인의 경우 순자산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음.

주의 잔여청구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개인의 경우 이러한 자기자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순자산액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